

감리지적 사례 FSS/2008-25 :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 쟁점분야 : 저축은행의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오류
- 관련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
- 결정연도 : 2015년
- 회계결산일 : 2011.7.1. ~ 2012.6.30.

1. 회사의 회계처리

K저축은행은 ①개인 워크아웃, 신용불량 등록여신, 폐업여신 및 부실징후 여신 등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②회사직원과 차주가 공모하여 이자대납을 위해 대출받는 등 실질적인 연체여신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내용

저축은행은 상업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데, K저축은행은 ①연체일이 아닌 신용불량등록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등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산일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였고, 법적진행 절차 여신, 부도 등의 여신에 대해서 규정에서 요구하는 건전성 분류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였고, ② 차주의 연체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직원과 공모하여 추가대출을 받았는데 해당 여신은 물론이고 해당 여신의 이자를 대납하기 위한 대출도 연체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고정’이하의 여신을 ‘정상’과 ‘요주의’로 분류하여 대손 충당금을 과소 계상하였다.

3. 지적근거 및 판단 내용

- ① 일반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문단 6.17의2에 따르면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개관적인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하고, 舊 상호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7조 내지 38조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저축은행이 관련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을 과소설정하였다고 판단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 ① 회계감사기준 250(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에 따르면 감사인은 회계 감사를 수행할 때 재무제표의 중요한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되는 법규조항의 준수에 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고 감사절차를 수행해

야하는데, 상호저축은행법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등에 대한 개념을 면밀한 검토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에 대해서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 등 관련 법규에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회계감사인은 저축은행 감사시 대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우 관련 규정과 규정 준수여부를 면밀히 살펴야한다. 단순히 회사가 제출한 자료를 단순히 확인하는 정도의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링을 통해 추출한 대출채권에 대해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대손충당금이 적립되었는지 검증하고 저축은행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경우 추가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등 대손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다른 산업군의 회사대비 높은 수준의 검토가 요구된다.